



경상북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 간의
위탁사업 협약서

- 사업명 : 2018년 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
- 사업기간 : 2018년 3월 ~ 2019년 2월
- 사업비 : 일억칠천만원정(₩ 170,000,000)
- 협약당사자

“갑” : 경상북도교육감(사업 주관교육청으로 17개 시·도 교육청 대표)
“을” : 한국교육개발원장

「2018년 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」에 관하여 “갑” 과 “을” 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“갑” 이 「2018년 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」을 “을” 에게 위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(사업내용 등)

- ① “갑” 이 “을” 에게 위탁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가. Wee클래스 상담 기록시스템 개발 및 Wee센터 기록시스템 수정·보완
 - 나. 상담 DB 서버 구축(서버 이전 시 이전에 관한 모든 비용 포함)
 - 다. 시스템 관련 담당자 워크숍 및 전달 연수
 - 라.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“갑” 과 “을” 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
 - 모든 간행물에 교육부, 주관교육청을 명시할 것
- ② “을” 은 “갑” 과의 사전 협의 하에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“갑”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
③ “을” 은 제2항의 기본 계획 및 세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“갑” 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조(제출사항) “을” 이 “갑” 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을” 이 “갑” 에게 제출해야하는 사항 : 「2018년 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」 사업 계획에 따른 산출물 및 결과 보고서
- ②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“갑” 이 “을” 과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

제4조(사업기간)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·수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 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제5조(사업비 지급 및 집행)

- ① “갑” 을 포함한 17개 시·도교육청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(이하 “사업비” 라 한다)를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“을” 에게 지급하되, 그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.

(단위: 천원)

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	세종	계
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70,000
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	
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	

- ② “을” 은 본 사업을 위한 간접비를 전체 사업비 15.5%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③ “을” 은 사업비를 “갑” 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·집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업비 관리)

- ① “을” 은 사업비를 관리·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“을” 은 지급 받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업비 정산) “을” 은 “갑” 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

제8조(협약의 변경) 주요 사항의 변경은 “갑” 과 “을” 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제9조(협약의 해약 등)

① “갑” 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가. “을” 이 협약내용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

나.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 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② 제1항의 경우 이미 지급한 사업비와 유무형적 발생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제10조(권리·의무의 양도 제한) “을” 은 “갑” 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협약에 의한 권리·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1조(손해배상 등)

① 이 사업의 관리·운영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비용 또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
②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 배상 등을 한 때에는 상대 당사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2조(관계자료 제출 등)

① “을” 은 “갑” 으로부터 사업추진현황, 관계 자료 열람 또는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 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“갑”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 협약 체결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협약에 의하여



처리한 것으로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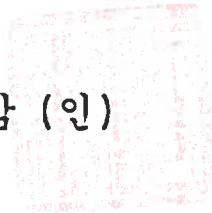
제3조(협약의 운영)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“갑” 과 “을” 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“갑” 의 해석에 따른다.

제4조(협약서의 보관)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“갑” 과 “을” 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9월 4일



경상북도교육감 (인)



한국교육개발원장(인)

